

제42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1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5)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2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2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3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3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3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3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6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6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9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9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9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1)	9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9
10.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10
11.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5)	10
12.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10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10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10
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2)	10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10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10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10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10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10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10
2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10
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10
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10
2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10
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10
3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10
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10
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10
3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10
3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10
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10
3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10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10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10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0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건설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과 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국토위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워 나갈지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국토위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야 간에 그래도 큰 정치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잘 토론을 해 왔던 상임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먼저 국토위에서 활동하셨던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잘 청취하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문제 그리고 SOC의 적절한 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도시 균형발전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택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 지역 출신으로는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 지역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차관과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이상경입니다.

이렇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저출생, 지역 간 불균형, 저성장 경제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차관으로 부임하게 된 만큼 5극 3특 조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회복 등과 같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진정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국토 분야의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의견과 제안들이 국토교통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업 국토교통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제2차관으로 임명된 강희업입니다.

대중교통, 도로, 철도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에 SOC가 미치는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을 통해 모빌리티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항공·철도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님을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7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한 강주엽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 권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취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권자가 저를 새만금청장에 임명한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께서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은 하되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어 달라는 두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13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7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로부터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14시15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규정된 기간

을 염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서면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7월 24일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구두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 요지서를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7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 운영이나 자료제출 등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준호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충격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포착했고 이와 관련된 경고를 날린 게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특검은 국토부2차관을 지냈던 국민의힘의 김희국 전 의원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정책과 직원들을 이달 초에 불러 모았고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행위가 포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용역사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당선 20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 2022년 3월 말이겠지요— 당시 도로정책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종점을 강상면으로 한 노선을 최종 노선인 것처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용역 수행의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내부에서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장이나 그 윗선에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검도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까지 국토부 내부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는 특검 수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국토부 내부에서 이런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주시고 재발방지책과 함께 저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2차관님, 천준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가 준비되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의사일정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과 관련된 내용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장들이 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새로 임명되신 분들 오늘 새로 와서 인사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관사 투자로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의 공분을 사서 이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덜컥 나와서 인사를 하면 그냥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용인하는 것입니까?

아니, 흑석동 투기로 온 국민이 분노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살면서 굳이 관사를 배정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 관사를 배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재테크에 간접 지원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하고의 경선에서도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버젓이 저렇게 앉아 있는 데다가 아직까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청문회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와서 덜컥 인사를 해 버리면 마치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어떻게 업무와 연계해서 이것을 진행할 건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돼서 과거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본인의 소신도 들어 보고 싶으니 이 자리에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의겸 청장이 참석을 한 것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아서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참석을 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통보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출석을 하고 그 의견을 개진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필요한 경우에 나중에 다음 회의 진행할 때까지 지금 말씀을 듣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청장 인사권이 우리 국토위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인사를 하나하나씩 거론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측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런 부분들은 서로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장이 여기를 참여했다 안 했다, 여기 우리 여당 위원 중에서 청장 참여나 바뀐 차관들 참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통보받은 사람 있습니까? 모두 다 이 내용들은 오늘 와서 안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 내에 있는 것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인 것이고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관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저희가 청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시기에는 서로 좀 화합하는 시기로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김의겸 청장께서 참석하신 것은 하자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전에 국회에 통보를 하거나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희정 위원 제가 자료 요청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어떤 자료 말씀……

○김희정 위원 잠시만 마이크 넣어 주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 첫 번째, 과거 본인의 행적이 부동산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저는 사과와 각오에 대한 게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사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공직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의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갈 계획인지 등등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청장님이 판단하셔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적절하게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0)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1)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6)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1)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2)

10.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0)
11.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5)
12.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1)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7)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22)
1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2)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3)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3)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6)
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2)
2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8)
2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3)
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3)
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4)
2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2)
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7)
3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9)
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2)
3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4)
3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6)
3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2)
3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5)
3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2)
3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3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8)
4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4시25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37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권영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맹성규 의원, 이성권 의원,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도입된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300만m²에서 100만m²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시설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원녹지 정보체계 구축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의원, 김희정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각각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급주택에 대한 인수가격 상향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용갑 의원과 염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의원과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인중개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16일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18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을 공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절차에 맞추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용갑 의원, 민형배 의원, 김예지 의원, 이해민 의원, 조지연 의원, 진종오 의원, 이춘석 의원, 이수진 의원, 송석준 의원, 문진석 의원, 윤재옥 의원, 권향엽 의원, 김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 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 운용 의무를 신설하며, 조류유인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하도록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이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시설의 귀속에 관한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여객자동차운송안정기여금의 세입 근거와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의 세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기여금의 법정 용도(택시감차, 택시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세출 근거에 명시하고, 현행 공항계정의 명칭을 항공공항계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 간 한시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권영진 소위원장님과 복기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군 위원님.

○윤종군 위원 오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교통소위에서 차관님께서 ‘3년 일몰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량화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1차 도입 당시에 보면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현장에서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화물연대 쪽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을 보면 안전운임제 대상 중 36.75% 만이 현장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진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고요. 당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를 받았던 화물자동차안전운임신고센터의 조사원이 단 1명에 불과해서 실제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사례가 4%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차관님, 이번에는 정말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치밀하게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조사원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지금 몇 명까지 계획을 갖고……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현재 저희가 계획은 당장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안전운임운영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데 일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제도가 뒤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정량적 통계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도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는지 또 품목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국토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 부분도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다음 상임위까지 연구용역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회 내에 안전운임제 발전을 위한 TF 형태의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카카오택시 때처럼 여야 위원 또 정부,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화물연대 등 사회적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확대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방금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위원장 맹성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정리해서 이야기하실 겁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일단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한시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사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게 있는데요.

현행대로 지금 3년 일몰제로 운영하게 되면, 지난번에 부대조항이 있었거든요. 부대조항을 전임 집행부에서 삭제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삭제한 건지 다시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건지, 혹시 차관님 아시면 답변하시면 좋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지금 원점에서 한번 볼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운임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부대조항도 가능하면 살리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 부대조항 없으면 사실 법의 실효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단속 근거도 문제고 처벌규정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 당연하게 다시 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임위원회 숫자가 기존에 화주 3명, 운수사 3명, 차주 3명, 공익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선은 과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논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그런 숫자가 너무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윤종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기구가 구성되고 연구용역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일몰제 이런 제도들이 꼭 일몰이 닥치면 그때서 허겁지겁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았는데 3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회적 논의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대

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일몰 때까지, 3년 동안 위원장을 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안은 상시화된 법으로 제출했는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법이 어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안정성 있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채택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국토부에서 이것의 효과랄지 이런 것들 정량화해서 3년 동안, 그래서 일몰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가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3년 한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국토부가 지금부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계와 정량화해서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일몰 때 이것을 상시화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국토부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화물연대랄지 화물 관련한 주체들과 소통을 계속해 나가서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을 국토부가 솔선수범해서 풀어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단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현장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법률이 정한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운수종사자의 생계와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운임 산정과 철저한 단속 등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적 차종이나 품목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정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군 위원님께서 상임위 내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에 관해서 상시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간사님들 간의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논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8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8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종오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오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윤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오 위원** 지금 품목 확대도 되지 않고 상시 운영도 안 되고 일몰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회의록과 심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표결은 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경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총 3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원활하게 잘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님께서 원활한 자료제출을 소위 조건으로 해서 저 혼자만 증인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증인을 좀 빼 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는 양당 간사님께 일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다 지났습니다만 개인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희가 위원장님 명의로 이렇게 의결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100% 자료제출 요구가 잘 된 상임위원회 그리고 그런 인사청문회로 모범적인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나 다른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다 자료제출 요구하지 않던 건과 거의 동일한 건이라서 증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인 간 채무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인 간 채무 관련돼서 계약서가 만료됐는데도 재계약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이자 지급된 내용도 없고 이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해 달라거나 또는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양당 간사님께서 이렇게 안 부르는 것으로 하셨으니 또 이런 것을 개인정보라고 피해 가지 않도록 의결한 내용에 들어 있으니 잘 제출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충실히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도 상황을 좀……

○**김희정 위원**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증인을 불러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위원장 맹성규 자료제출 상황을 보고요 그때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양당 간사 간에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 잘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오늘 상임위가 몇 개월 만에 열려서 11건의 법안이 통과돼서 모처럼 상임위가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의 민생과 업계 사정은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 상황도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생법안에 해당될 수 있는 국토와 교통 쪽의 법안 중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은 법안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법안심사소위 때 제가 권영진 위원장님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점검해 봐서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모아서 한번에 좀 신속히 처리합시다 하는 제안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여야 간사 협의를 해서 여야 간에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지금 순서에 관계없이 많은 국토와 교통 쪽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지금 많은 법안들이 제안돼 있고 또 의원 발의로 쌓여 있더라도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것은 신속히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같이 해서 속도를 내고 실효성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행정실에서는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법안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더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김희정 위원 좋습니다.

○한준호 위원 소위를 자주 열어 주십시오, 소위.

○위원장 맹성규 소위.

○문진석 위원 소위를 자주 해야지 소위 안 열고 어떻게 법안 통과되나.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두 간사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권영진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되시더니 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맹성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권영진 김도읍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염태영 염태영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정준호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3인)

김은혜 김정재 정점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염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기획조정관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6)

이상 2건 6월 26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5)

6월 27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6. 2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9)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6. 2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1)

이상 6건 6월 30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3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3)

이상 2건 7월 1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장철민 의원·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서범수 의원·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1)

이상 3건 7월 2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8)

7월 3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4.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2)

이상 4건 7월 7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3)

이상 4건 7월 8일 회부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3)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9)

이상 5건 7월 10일 회부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0)

이상 4건 7월 11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이상 2건 7월 14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4.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9)

7월 15일 회부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3)

7월 16일 회부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신장식 의원·윤종군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9)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025. 7. 16. 대통령 제출)

이상 2건 7월 17일 회부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5)

이상 2건 7월 1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6.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9)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6.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7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

(2025. 7. 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9)

이상 2건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0)

7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5)

7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580호	2025. 6. 2.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581호	2025. 6. 2.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582호	2025. 6. 2.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583호	2025. 6. 2.	대통령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603호	2025. 6. 25.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5604호	2025. 6. 25.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05호	2025. 6. 25.	대통령령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606호	2025. 6. 25.	대통령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489호	2025. 6. 2.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91호	2025. 6. 4.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1493호	2025. 6. 2.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494호	2025. 6. 2	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95호	2025. 6. 2.	부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6호	2025. 6. 2.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498호	2025. 6. 2.	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00호	2025. 6. 4.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01호	2025. 6. 10.	부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02호	2025. 6. 18.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03호	2025. 6. 30.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04호	2025. 6. 30.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05호	2025. 6. 30.	부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53호	2025. 6. 2.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3호	2025. 6. 10.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3호	2025. 6. 11.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6호	2025. 6. 11.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7호	2025. 6. 11.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4호	2025. 6. 20.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7호	2025. 6. 23.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8호	2025. 6. 25.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58호	2025. 6. 25.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73호	2025. 6. 27.	입법예고